



「두산위브 더 센트럴 부평 중도금대출 안내」

대출대상

대출금리

대출한도

상환기일

상환방식

중도금대출 제출서류

1.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**1개월 이내** 발급 및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출

2. 공동명의 계약자는 공동명의자의 제출서류를 각각 준비하여 제출

대출관련 비용부담

<p>▶ 계약금 10%이상 납부한 분양계약자</p> <p>※ 공동명의 분양계약일 경우 공동명의자 방문 필수(신분증 및 서류 지참)</p> <p>▶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</p> <p>※ 중도금보증대출 이용건수 합산 세대기준 합산 2건까지 대출 가능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대출 기준금리(A) [2024년 11월25일 기준]</th> <th>가산금리(B)</th> <th>대출금리(C) [C=A+B]</th> </tr> <tr> <td>(COFIX 신규 6개월 변동) 3.37%</td> <td>1.10%</td> <td>4.47%</td> </tr> </table> <p>※ 대출일 적용될 COFIX기준금리는 매월 15일 15시 이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</p> <p>※ 새마을금고 기준금리는 매월 25일부터 적용</p>	대출 기준금리(A) [2024년 11월25일 기준]	가산금리(B)	대출금리(C) [C=A+B]	(COFIX 신규 6개월 변동) 3.37%	1.10%	4.47%									
대출 기준금리(A) [2024년 11월25일 기준]	가산금리(B)	대출금리(C) [C=A+B]													
(COFIX 신규 6개월 변동) 3.37%	1.10%	4.47%													
<p>▶ 분양계약자 : 분양금액의 60% 이내</p> <p>※ 정부의 정책변경, 당행 주택자금대출 규정, 대출 신청인의 신용상태, HUG 보증서발급 한도에 따라 취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</p>															
<p>▶ 준공 후 입주기간 지정시 그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전액상환 또는 잔금대출 전환</p>															
<p>▶ 일시상환방식 (준공 후 입주지정 기일 내 상환)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필수서류</th> <th>소득증빙서류 (해당되는 소득을 선택하여 제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 <p>① 계약금 납부영수증</p> <p>② 분양(공급)계약서 원본</p> <p>③ 신분증(공동명의자 포함)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</p> </td> <td> <p>급여소득자</p> <p>재직증명서 +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2개년)</p> <p>☞ 단기 재직자는 3개월분 급여명세표로 소득증빙가능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사업소득자</p> <p>사업자등록증(사본)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)</p> <p>☞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제출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보험모집 등의 프리랜서</p> <p>위촉계약서 등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)</p> <p>☞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연금소득자</p> <p>연금증서(연금수급권자확인서) + 통장거래내역확인서</p> <p>☞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권자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p> <p>☞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또는 1577-1000 FAX 발급</p> </td> <td rowspan="3"> <p>기타소득자 (무소득자 포함)</p> <p>★기타소득자와 무소득자는 국세청(홈택스 인터넷사이트)의 소득신고 사실이 없다는 "사실증명"을 반드시 제출</p> <p>※ 인터넷사이트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소득신고사실없음) 발급 또는 세무서 또는 동사무소 방문 발급</p> <p>★"사실증명" 발급 후 아래의 ㉠, ㉡, ㉢ 중 증빙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</p> <p>※ 제출순서는 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㉡를 제출, ㉡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㉢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제출</p> <p>㉠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</p> <p>☞ 분양계약자가 건강보험 지역세대주만 인정</p> <p>㉡ (국민)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납부내역서</p> <p>☞ 분양계약자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정</p> <p>㉢ 전년도 신용(체크)카드소득공제확인서(은행합산 가능)</p> <p>☞ 국세청(홈택스)발행 또는 소득공제용 카드사용내역서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⑥ 주민등록등본</p> <p>☞ 주민번호 및 가족관계 포함</p> <p>☞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⑦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원초본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</p> <p>☞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필수! 발급신청</p> <p>☞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제출</p> </td> <td> <p>사실증명과 오른쪽 ㉠, ㉡, ㉢에서 순서대로 해당되는 소득을 선택</p> </td> </tr> <tr> <td> <p>⑧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)</p> <p>⑨ 국세납세증명서</p> <p>⑩ 지방세납증명서</p> <p>☞ 국세, 지방세 미납시 납부후 발급</p>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필수서류	소득증빙서류 (해당되는 소득을 선택하여 제출)	<p>① 계약금 납부영수증</p> <p>② 분양(공급)계약서 원본</p> <p>③ 신분증(공동명의자 포함)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</p>	<p>급여소득자</p> <p>재직증명서 +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2개년)</p> <p>☞ 단기 재직자는 3개월분 급여명세표로 소득증빙가능</p>	<p>사업소득자</p> <p>사업자등록증(사본)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)</p> <p>☞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제출</p>	<p>보험모집 등의 프리랜서</p> <p>위촉계약서 등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)</p> <p>☞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</p>	<p>연금소득자</p> <p>연금증서(연금수급권자확인서) + 통장거래내역확인서</p> <p>☞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권자</p>	<p>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p> <p>☞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또는 1577-1000 FAX 발급</p>	<p>기타소득자 (무소득자 포함)</p> <p>★기타소득자와 무소득자는 국세청(홈택스 인터넷사이트)의 소득신고 사실이 없다는 "사실증명"을 반드시 제출</p> <p>※ 인터넷사이트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소득신고사실없음) 발급 또는 세무서 또는 동사무소 방문 발급</p> <p>★"사실증명" 발급 후 아래의 ㉠, ㉡, ㉢ 중 증빙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</p> <p>※ 제출순서는 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㉡를 제출, ㉡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㉢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제출</p> <p>㉠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</p> <p>☞ 분양계약자가 건강보험 지역세대주만 인정</p> <p>㉡ (국민)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납부내역서</p> <p>☞ 분양계약자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정</p> <p>㉢ 전년도 신용(체크)카드소득공제확인서(은행합산 가능)</p> <p>☞ 국세청(홈택스)발행 또는 소득공제용 카드사용내역서</p>	<p>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/p>	<p>⑥ 주민등록등본</p> <p>☞ 주민번호 및 가족관계 포함</p> <p>☞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</p>	<p>⑦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원초본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</p> <p>☞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필수! 발급신청</p> <p>☞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제출</p>	<p>사실증명과 오른쪽 ㉠, ㉡, ㉢에서 순서대로 해당되는 소득을 선택</p>	<p>⑧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)</p> <p>⑨ 국세납세증명서</p> <p>⑩ 지방세납증명서</p> <p>☞ 국세, 지방세 미납시 납부후 발급</p>	
필수서류	소득증빙서류 (해당되는 소득을 선택하여 제출)														
<p>① 계약금 납부영수증</p> <p>② 분양(공급)계약서 원본</p> <p>③ 신분증(공동명의자 포함)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</p>	<p>급여소득자</p> <p>재직증명서 +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2개년)</p> <p>☞ 단기 재직자는 3개월분 급여명세표로 소득증빙가능</p>														
	<p>사업소득자</p> <p>사업자등록증(사본)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)</p> <p>☞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제출</p>														
	<p>보험모집 등의 프리랜서</p> <p>위촉계약서 등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2개년)</p> <p>☞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</p>														
	<p>연금소득자</p> <p>연금증서(연금수급권자확인서) + 통장거래내역확인서</p> <p>☞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권자</p>														
<p>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/p> <p>☞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또는 1577-1000 FAX 발급</p>	<p>기타소득자 (무소득자 포함)</p> <p>★기타소득자와 무소득자는 국세청(홈택스 인터넷사이트)의 소득신고 사실이 없다는 "사실증명"을 반드시 제출</p> <p>※ 인터넷사이트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소득신고사실없음) 발급 또는 세무서 또는 동사무소 방문 발급</p> <p>★"사실증명" 발급 후 아래의 ㉠, ㉡, ㉢ 중 증빙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</p> <p>※ 제출순서는 ㉠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㉡를 제출, ㉡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 ㉢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제출</p> <p>㉠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</p> <p>☞ 분양계약자가 건강보험 지역세대주만 인정</p> <p>㉡ (국민)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납부내역서</p> <p>☞ 분양계약자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정</p> <p>㉢ 전년도 신용(체크)카드소득공제확인서(은행합산 가능)</p> <p>☞ 국세청(홈택스)발행 또는 소득공제용 카드사용내역서</p>														
<p>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</p>															
<p>⑥ 주민등록등본</p> <p>☞ 주민번호 및 가족관계 포함</p> <p>☞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</p>															
<p>⑦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원초본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</p> <p>☞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필수! 발급신청</p> <p>☞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제출</p>	<p>사실증명과 오른쪽 ㉠, ㉡, ㉢에서 순서대로 해당되는 소득을 선택</p>														
<p>⑧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)</p> <p>⑨ 국세납세증명서</p> <p>⑩ 지방세납증명서</p> <p>☞ 국세, 지방세 미납시 납부후 발급</p>															
<p>▶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료 : 연 0.13% ~ 0.15%</p> <p>▶ 중도상환수수료 : 면제, (단, 타행 대환시 1.0%로 한다.)</p> <p>▶ 수입인지대금(50% 고객부담) :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(35,000원), 1억원초과시(75,000원)</p> <p>▶ 중도금대출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: 고객부담(입주시 납부 => 후불)</p>															

주택대출(중도금) 규제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
대출규제 정책 등으로 중도금대출 및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새마을금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 제출하는 대출관련 제출서류가 다수 추가되었고 채무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관련 대출금액, 건수 등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취급 가능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. (대출불가시 경우만 별도안내)

<p>중도금 대출 제한기준</p>	<p>새마을금고 중도금대출 제한기준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재 연체 채권 보유, 체납 등 신용불량정보 보유 및 과거 금고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손실을 끼쳤거나, 보증기관 구상채권 채무관계자일 경우 대출 불가 (신용등급이 낮은 경우) 2. 분양계약자 및 세대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존 주택관련 대출 (본건 중도금대출을 포함하여 2건까지 가능) 3.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분양계약자(중도금대출 안내장 참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도금대출 안내장상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분양계약자는 해당 대출영업점과 상의
<p>대출 취급여부 판단 대상 세대원의 범위</p>	<p>“세대원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(미성년자 포함)</p> <p>단, 형제자매, 동거인은 제외</p>	
<p>새마을금고 중도금대출 담당영업점</p>	<p>[일반분양자 취급금고]</p> <p>산곡십정 새마을금고 인천 부평구 길주로 364번길 9(산곡동, 부평IPARK) 산곡십정새마을금고 ☎ 032-527-2464(내선2번)</p> <p>부평제일 새마을금고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50(산곡동) 부평제일 새마을금고 032-514-3931(내선2번)</p>	

- 당 금고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정부정책,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자격, 대출한도,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대,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대출 보증서 보증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.
- **향후 잔금전환 시 DTI 산정, 스트레스DTI 산정, DSR산정, 비거치·분할상환등 규제가 적용되어 잔금대출이 거절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이자납입 지연 시 최고 연 16%의 연체이자 발생됩니다.
- 이 안내장은 고객 여러분께 대출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내용을 간략하게 작성되었으며, 대출가능 여부는 당 금고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, 해당 금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